

## 2021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계획 공고

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7월 27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### 1. 채용개요

○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

근무예정부서(소재지)	채용분야	채용직군	인원(명)	비고
계			3	
밀양소방서(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)	영양사	<나>직군 관련기능 종사직	1	
남해소방서(남해읍 스포츠로 81)			1	
함양소방서(함양읍 고운로 161-41)			1	

○ 직무내용

채용분야	주요업무 내용
영양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소방서청사 급식소(본서+구조대+직할 안전센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「식품위생법」 제52조 2항에 정하는 "영양사" 직무 수행</li><li>- 「식품위생법」 제51조 2항에 정하는 "조리사" 직무 수행</li></ul></li><li>○ 일반 안전센터 등 급식소 식단 및 위생관리</li><li>○ 급식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등</li></ul>

## 2. 응시 자격 요건

### 가. 공통요건

-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1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#### <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>

**제13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공무원노동자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인 자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) ※ 정년 : 만60세
  - 다만,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
- 거주지 제한 :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  -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
  -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- 성별, 학력 : 제한 없음

## 나. 개별 자격 기준 및 가점 부여 요건 등

- 필수자격 :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
  - 영양사 면허증(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자)
  - 조리사 면허증(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자)
-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“적격” 판정을 받은 자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
- 개별 가점 기준 :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집단급식소 근무경력

채용분야	개별우대(가점) 요건	점수표	
영양사	○ 식품위생법 제2조(정의) 제12호에서 정한 집단급식소*에서 영양사 근무 경력**자 *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** 경력은 영양사 면허증 취득 이후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함	48개월 이상	3점
		24개월 이상 ~ 48개월 미만	2점
		13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1점
		6개월 이상 ~ 13개월 미만	0.5점

※ 필수자격 및 개별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원서제출 기한 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와 미제출 시에는 가점 불인정

### ○ 공통자격 요건, 필수자격, 개별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안내

구 분	증빙자료	제출 및 증빙 요령
공통자격	주민등록초본	전체 주소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하여 제출 (기준일 : 공고일 전일)
필수자격	① 영양사 면허증 ② 조리사 면허증	① 영양사 면허증 사본 제출 ② 조리사 면허증 사본 제출(조리기능사 자격증 아님) * 상기 면허 2종은 공고일 전일기준 유효한 면허증일 것
우대요건 (경력가점)	① 경력(재직) 증명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 신고증	① 해당기관 등에서 발급한 경력(재직)증명서를 제출 하되 근무기관*(업체), 근무기간, 담당업무(영양사 등)가 명시되어야 함 *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관(업체)명을 기재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, 다만, 해당 기관 업무분장 관련 내부 결재문서 첨부 등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자료 추가 첨부 시 인정 ②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* 사본 제출 *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제 근무한 기관(업체)에 발급한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

※ 증빙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# 3. 시험 방법

#### ○ 1차 : 서류전형

- 응시자격 공통 요건 기준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,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 여부, 직무수행 관련 개별 가점 부여 요건 등 형식 요건 심사
- 응시인원이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공통요건을 충족한 전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처리
- 선발예정 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개별가점 부여 요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선발예정 인원의 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

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	서류전형 합격자	결정기준
1명	7배수 이내	① 서류전형 개별 가점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어 배수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동점 인원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. 7배수 예시) 8명이 응시하였을 경우 1위 ~ 5위까지 가점 보유, 6위 ~ 8위 모두 가점이 0점으로 동점일 경우 8위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다만, 해당 채용분야에서 개별 가점이 있는 자가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점이 있는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② 서류전형 개별 가점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응시 자격 공통요건에 적합한 사람은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

#### ○ 2차 : 면접시험

- 대 상 : 1차(서류) 전형을 통과한 사람
- 평가방법 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아래 5개 평정항목에 대해 평가함(총점 100점 기준)
  - ① 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건강상태(25)
  - ②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(30)

-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(10)
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15)
- 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20)

○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

- 면접시험 불합격기준\*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면접위원 최고점,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와 개별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

\* 불합격기준 : 면접시험 위원외 과반수가 면접 100점 중 6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,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항목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요소별 배점의 60%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

**4. 채용 일정**

채용공고	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 (예정)	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
'21. 7. 27.(화)	'21. 8. 9.(월)~11.(수) (09:00~18:00)	'21. 8. 31.(화)	'21. 9. 6.(월) ~ 10.(금)	'21. 9. 17.(금)

※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

⇒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경상남도 홈페이지 '채용공고'(<http://gyeongnam.go.kr>) 게시

**5. 응시원서 접수**

- 원서교부 : 응시원서는 '채용공고' 상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
- 접수장소 :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(본관 2층)
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※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 접수 대신 등기우편 접수를 당부 드립니다.

<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>

- 주 소 : 우)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(사림동)  
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
- 유 효 일 :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(택배,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)  
\*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
- 추가서류 : 반신용 봉투(응시표 수령용, 등기용 우표 부착, 수신인 성명·주소 기재)

## 6.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(붙임 양식)
- ② 응시원서 1부(붙임 양식)
  - ▶ 응시 부서, 분야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, 중복응시 불가
  - ▶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(3cm×4cm) 1매
- ③ 이력서 1부(붙임 양식)
  -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- ④ 자기소개서 1부(붙임 양식, A4 3매 이내)
- ⑤ 주민등록초본 1부
  - ▶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전체 주소 변동내역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
  - ▶ "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주민등록번호 기재)"를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
- ⑥ 경력(재직)증명서 1부
  - ▶ 발행기관(단체)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  - ▶ 근무부서(업체), 직책, 담당업무(영영사 등)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되며,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서류(근로계약서, 업무분장 등)를 별도 첨부
  - ▶ 경력(재직)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할 경우에 경력 인정 원칙
  - ▶ 경력기간은 서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함
  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점 해당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원본) 1부
 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 - ▶ 경력(재직)증명서의 경력기간과 일치여부 검토를 위해 "보험가입 전체기간" 발급

- ▶ 유의사항 :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

- ⑧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⑨ 최종 학력증명서 1부(원본)
- ⑩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1부(원본)

- ▶ 상기 개별 가점 부여 요건 관련 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 
다만, 개별 가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

- ⑪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(붙임 양식)
- ⑫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서류 1부

-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
-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원칙으로 함.  
다만, 자격·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함(예 :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, 자격증명서 등)
-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

## 7. 재공고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
-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하므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

## 8. 합격자 발표

- 경상남도 홈페이지 채용공고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 게시

## 9. 보수 수준

-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50조(임금)의 규정에 의함  
※ '20년 기본급(1호봉) : <나>직군 2,398천원/월

## 10. 복무관리 및 신분보장

-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함)」에 의함
  - 정 년 : 만60세까지(규정 제57조)
  - 근로계약 : 소속 부서의 장과 공무원노동자간 체결(규정 제17조)
  - 신규 채용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. 다만,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근무예정부서(분야)별 근무조건

근무예정부서(분야)	근무조건*
밀양·남해·함양소방서 (영양사)	○ 주 5일(월 ~ 금), 40시간/주 원칙 - 소방서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

\* 근거 :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30조(근로시간)에 의거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※ 보수 및 복무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로 직접 문의

\* 근거 :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30조(근로시간)에 의거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※ 보수 및 복무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11. 응시자 유의사항

-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본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함
-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

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
-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응시자격 검증,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.
-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, 선발취소, 계약해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'채용공고' 란 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에 게재함.(다만, 체력검정시험 일정/장소는 개별통지)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
  - ▶ 채용절차 : 인사과 고시교육담당(055-211-3524)
  - ▶ 직무내용, 근로조건, 보수 등 : 소방본부(☎ 211-5333) 또는 해당 부서 담당자

연번	근무처	채용인원	소재지	연락처	비고
계	3개 소방서	3명			
1	밀양소방서	1명	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	350-9214	
2	남해소방서	1명	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	860-9215	
3	함양소방서	1명	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61-41	960-9214	

## 12. 코로나19 예방 유의사항

- 면접시험일까지 해외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
-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
-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, 확진자와 접촉,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면접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발열(37.5°C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

\* 신고처 : 질병관리본부콜센터(1339), 경상남도 인사과(055-211-3524)

## ○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

- ① (출입금지) 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,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
- ② (유증상자)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,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
- ③ (응시자 및 감독관)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,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,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
  -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
  - 개인 음용수 준비

### <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>

<b>확진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</li> <li>※ 진단검사 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</li> </ul>
<b>의사환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<b>코로나19 임상증상*</b>이 나타난 자</li> </ul>
<b>조사대상 유증상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사의 소견에 따라 <b>코로나19 임상증상*</b>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</li> <li>•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<b>코로나19 임상증상*</b>이 나타난 자</li> <li>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<b>코로나19 임상증상*</b>이 나타난 자</li> </ul>
<b>감염병의심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</li> <li>• 「검역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</li> <li>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</li> </ul> <p>※ 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5의2호(2021. 6. 16. 시행)</p>

\* 임상증상 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※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**코로나19 예방조치**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 특히, 실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**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